

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

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(☎ 044-201-3358)

- ▶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거주형태, 임차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
-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급여가 시행되어 왔으나,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한계가 있었는데,
- 제도 개편으로 대상가구 수가 대폭 증가하고, 지원수준도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대폭 현실화됩니다. 아울러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, 자가가구에는 유지수선비를 보조하는 등 주거유형별로 지원방법도 차별화됩니다.

	대상규모	연 예산(국비)	월평균 지급액
현행	73만 가구	5,692억원	8만원
개편 이후	약 97만 가구	약 1조원	약 11만원

☞ (참고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>국토교통뉴스>보도자료>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

<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 >

- ▶ 추진배경 : 現 기초생활보장제도(2000 ~, 복지부)에서 기초수급자에게 지원하던 생계·주거·교육 등 7개 급여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
- ▶ 주요내용
 - ① 소득기준선 상향으로 대상가구수 증가(73만→97만가구) 및 지원수준 현실화(월8→약11만원), 주거유형별로 지원방법 차별화(임차-임차료, 자가-유지수선비)
- ▶ 시행일 : 2014.10. 시행예정
 - ※ 자가가구에 대한 보조는 2015.1월부터 개편 시행